전자계산서 제도 관련 질문 답변

*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는 대신에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2015. 11.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2015.7월 및 2016.1월 거래분부터 시행(예정)**중에 있습니다.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납세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TS 전자세원과

목 차

(목차의 제목과 본문의 제목 간 하이퍼링크 연결)

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1.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는? ····· 1
2.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 2
3. 2016.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 ····· 3
4.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 4
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5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5

Ⅱ. 전자계산서 발급[발급시기, 발급기한 등]

1.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6
2.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 7
3.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 7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 8
5.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 8

6.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9

7.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 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9

8.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9

Ⅲ.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1.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 10

2.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 10

3.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 11

Ⅳ.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1.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 12

2.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 13

3.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가산세와 전송 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 13

4.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14

5. '15.7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15년에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16년에 전송**시 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14

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질문 1)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는?

○ 아래 **ⅰ), ⅱ) 동시 충족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질문2 참조)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ⅰ)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아래 표 참조)

ⅱ) 주로 **사업자간 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

법령	내 용
부가가치세법 §26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 * 식료품: 곡류, 과실류, 채소류, 생선류, 해조류, 소금 등 -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용역(쌍꺼풀, 성형수술 등은 제외) -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허가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 -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전세버스,택시 등은 제외) - 도서, 신문, 잡지 등(광고는 제외) - 금융보험 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10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질문 2)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인 **발급의무 개시일별로 다르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 개시일	대상 사업자
2015.7.1.	- 모든 법인 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기준과 동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종이 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2016.1.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 겸업**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6.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 >

인용법령	내 용
부가가치세법 §36①1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계산서 발급은 가능(소득 46011-3261, '99.8.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②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등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수증 발급 소비자 대상 사업 *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자동차제조업 및 판매업 등

(질문 3) 2016.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

○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분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 ○(면세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 ×(과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질문 4)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 소득세법령에 인별 또는 사업장 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또한, 계산서는 재화·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 거주자 갑의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3억원	11억원	2억원	A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있으나, B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없음 * 복수 사업장 합계 수입금액은 10억원 이상이나, B사업장은 10억원 미만
사례2	13억원	6억원	7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가 없음 * 전체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는 10억원 이상이나, A,B 사업장 모두 10억원 미만
사례3	8억원	5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가 없음 * 각각의 사업장 모두 10억원 미만

(질문 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질문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고, 영리법인과 같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상기 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 시 **법인세법 §76⑨ 및 같은 법 시행령 §120②**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Ⅱ 전자계산서 발급(발급시기, 발급기한 등)

(질문 1)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하거나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 **(사례 1)** '15.9.1. ~ '15.9.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5.9.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5.10.12.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 **(사례 2)** '15.9.1. ~ '15.9.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5.9.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5.10.12.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 **(사례 3)** '15.9.1. ~ '15.9.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5.9.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5.10.12.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질문 2)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曆月: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 ~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되며**,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매출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서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질문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는지?

○ 종이계산서 발급의 **법적효력은 인정**되나, **종이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해당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 **발급의무자별 1% 가산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		1% 가산세 부과시기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추가 시행)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17.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질문 5)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전송된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를 준용**합니다.

- 주요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로는 「처음에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전자계산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등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질문 6)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아님)

* 질의회신: 소득46011-3261, '99.8.18.

(질문 7)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 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 10건의 거래에 대해 홈택스로 5건,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5건을 발행해도 됩니다.

(질문 8)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대부분 사업장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정해지며,

- 발급의무자별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법인: 개업일 ~ 폐업일 - 개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 그 다음해 6.30 (수정신고 등의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그 다음 과세기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추가시행)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12.31

Ⅲ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질문 1)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 국세청 전송이란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으나,**
- **발급대행 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계산서는 적법한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오류수정 절차를 거친 후, 국세청 홈택스로 재전송**해야 합니다.

(질문 2)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전송기한이 순연**됩니다.

* 작성일자가 '15.10.30.(금)인 전자계산서의 전송기한은 '15.10.31(토)이나 토요일이므로 '15.11.2.(월)까지 전자계산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질문 3)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 전자계산서를 전송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가산세 부과 지연전송과 미전송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연전송	미전송
개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근거 - (개인)소득세법 §81③5,6호, (법인) 법인세법 §76⑨5,6호

○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 소득세법 §5, 법인세법 §6

- **개인과 법인이 지연전송과 미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예시>

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A가 '15.10.16. 전자계산서 발급

→ '15.10.20.(10.17.이 전송기한이나 공휴일로 순연) ~'16.1.11.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16.1.12.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15.7.1.~'16.6.30.) B가 '15.10.16. 전자계산서 발급

→ '15.10.20.(10.17.이 전송기한이나 공휴일로 순연) ~'16.7.11.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16.7.12.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Ⅳ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질문 1)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 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1%	0.5%	0.5%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3%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질문 2)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같습니다.**(Ⅱ-질문1 참조)

- 계산서 발급기한 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율은 1%로써, 일반적인 미발급 가산세율(2%)보다 낮으며**

- 종이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질문 3)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가산세와 전송 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 발급한 전자계산서가 없어 국세청에 전송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전자계산서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면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81③5,6호, 법인세법 §76⑨5,6호

(질문 4)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개인 및 법인사업자별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기준이 다소 다르며, 가산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발급·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며,
- (개인사업자) 발급위반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고, 전송위반 가산세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구분	발급위반 가산세	전송위반 가산세
법인	모든 법인사업자에 부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 한함

(질문 5) '15.7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15년에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16년에 전송시 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15.7월 이후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16년 이후에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 '16.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